



# 건설기술혁신사업

- 2009년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분리공모과제 공고 사업설명회 -

*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&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*

일시 : 2009. 4. 30(목), 15:00

장소 : 도로교통연구원내1층 대강당



# CONTENTS

1. 건설기술혁신사업 개요
2. 과제 구성 및 금번 공고 과제
3. 신청·접수 및 선정평가
4.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

# 1. 건설기술혁신사업 개요



# → 건설기술혁신사업 개요

## ● 사업 및 분야별 목표

국가 SOC시설물  
지능화·고도화 및  
저비용 고효율화를  
통한 건설기술혁신

### 미래형 도로

도로 안전성·이동성·편리성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도로기술 개발

### 차세대 교량

초장대교량 첨단교량형식 개발 및 설계·시공·유지관리·운영 기술 개발

### 환경친화적 수자원시스템

홍수피해저감기술 및 물관리시스템 구축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복원기술 등 개발

### 재해·안전 대응 및 첨단재료·프로세스 혁신

첨단재료 개발, 기존 국가시설물 고도화 첨단기술(IT,NT등)과의 융복합 기술개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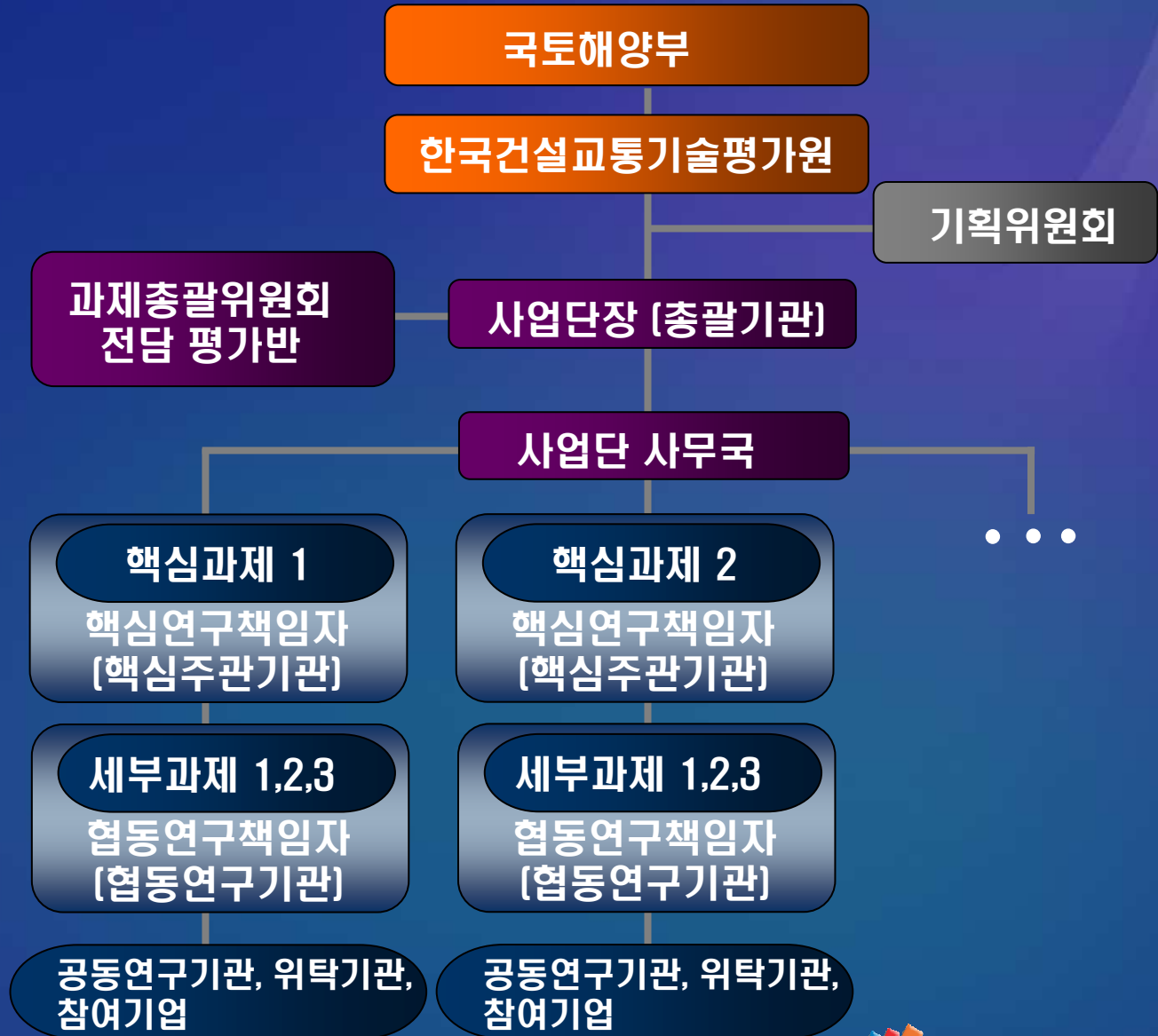
# ▶ 사업단 추진 체계

**과제 개요**

연구개발결과의 시범 적용을 위한 시제품 제작 또는 Test-Bed 를 포함한 실용화 중심의 중대형 과제

**연구비 및 연구기간**

연구비 : 연간 100억 내외  
 연구기간 : 5년 이상



## 2. 과제 구성 및 금번 공고 과제



# 과제구성 및 공모계획



구분	과제명	세부과제	세부과제내 연구과제 [통칭 '세세부과제']	기추진과제	분리공모과제 연구기관 공모	
					2009년	2010년이후
총괄 과제	SMART Highway 종합전략수 립	총-1 SMART Highway 사업 총괄관리 및 지원		총괄기관		
		총-2 SMART Highway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		○		
		총-3 SMART Highway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		○		
핵심 1과제	SMART Highway 도로기반시 설 핵심기 술개발	[1-1] SMART Highway의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	[1-1-1] 안전시설 설치방안 연구	○		
			[1-1-2] 운전자의 효율적 안내기법 연구		○	
		[1-2] SMART Highway 친환경 디자인 기술 개발	[1-2-1] 환경시설 설치방안 연구	○		
			[1-2-2] 자연에너지 시설물 활용 연구		○	
			[1-2-3] 디자인 기술 개발	○		
		[1-3] SMART Pavement 설계기술 개발	[1-3-1] 포장형식 및 공법개발 연구	○		
			[1-3-2] 도로구조 내구성 확보기술 개발	○		
			[1-3-3] 포장성능 평가방안 연구	○		
		[1-4]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도로 시설물 연구	[1-4-1] 안개 및 강풍 대응 도로시설물	○		
			[1-4-2] 강설대비 도로시스템 연구		○	
		[1-5] SMART Structure 설계기술 개발	[1-5-1] 교량 사용성 증진 쾌적성 확보	○		
		[1-6] 최첨단 지능형 도로 관리시스템 기술 개발	[1-6-1] 통합유지 관리 시스템 개발		○	

# 과제구성 및 공모계획 (계속)



구분	과제명	세부과제	세부과제내 연구과제 [통칭 '세세부과제']	기추진과제	분리공모과제 연구기관 공모		
					2009년	2010년 이후	
핵심 2과제	SMART 도로-IT 기반 교 통운영기 술 개발	[2-1] SITMS 종합시스템 구축 및 검증	[2-1-1] 아키텍처 설계 및 시스템 구상	○			
			[2-1-2] 최적 검지체계 구축 및 활용	○			
			[2-1-3] 교통정보선데 설계 및 구축	○			
			[2-1-4] 현장 검증 및 평가			○	
		[2-2] 쌍방 C&R 구현을 위 한 연속적 노변 무선통신시 스템 구축	[2-2-1] 노변기지국 시스템 및 정보교환기술			○ [별도공모]	
			[2-2-2] SMART 단말 모듈 및 컨텐츠 개발				
		[2-3] SMART Highway 교 통류 최적화 관리기술 개발	[2-3-1] 교통류 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	○			
			[2-3-2] 최적 교통류 유지 및 제어기술 개발	○			
			[2-3-3] 특수상황시 혼잡완화 및 안전확보	○			
		[2-4] 무정차, 다차로 기반 SMART영업시스템 구축	[2-4-1] 정산 및 통신시스템 개발				○
			[2-4-2] 운영 및 차량 관리시스템 개발				
		핵심 3과제	SMART 도로-자 동차 연 계기술 개발	[3-1] SMART 도로정보수 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	[3-1-1] 레이다 이용 관제 시스템 구축	○	
[3-1-2] 도로관리용 첨단차량 시스템 구축						○	
[3-2] SMART 도로 - 자동 차 사고예방 지원기술 개발	[3-2-1] 주행로 이탈예방 지원기술 개발			○			
	[3-2-3] 연쇄사고예방 지원기술 개발			○			
[3-3] SMART 도로-자동 차 제어 지원기술 개발	[3-3-1] 자동차 제어 지원정보 제공기술개발						○

# → 과제구성 및 공모계획 (계속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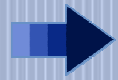
구분	과제명	세부과제	세부과제내 연구과제 [통칭 '세세부과제']	기추진과제	분리공모과제 연구기관 공모	
					2009년	2010년이후
핵심 4과제	SMART Highway 구조·시설 기준 및 Test Bed 구축	[4-1] SMART Highway 구조·시설기준 구축	[4-1-1] 지능화 도로환경 설계기본요소 연구	○		
			[4-1-2] 횡단구성 연구	조기종료		
			[4-1-3] 선형설계 연구	조기종료		
			[4-1-4] 진출입시설 형식 및 설계 연구	○		
			[4-1-5] 용량산정 연구	조기종료		
		[4-2] SMART Highway 실행 방안 연구 및 Test Bed 구축	[4-2-1] 실행방안 연구	○		
			[4-2-2] 성과의 설계적용 방안 연구			○
			[4-2-3] Test Bed 설계 및 시공	-	-	-
		[4-3] SMART Highway Test Bed 관리 및 모니 터링	[4-3-1] Test Bed 통합관리방안 연구			
			[4-3-2] Test Bed 모니터링 방안 연구			○
			[4-3-3] 기술성과 분석 및 보완방안 연구			

# ➔ 지원과제 및 예산

## 지원과제 및 예산 총괄(계속)

### ● 분리공모과제(제안공모과제) 연구기관 5개 공모

구분	과제명	분리공모과제명	3차년도 정부출연금
핵심 1과제	SMART Highway 도로기반시설 핵심 기술개발	[1-1-2] SMART Highway 운전자의 효율적인 안내기법 연구	0.75억원 이내
		[1-2-2] 자연에너지의 도로시설물 활용방안 연구	0.90억원 이내
		[1-4-2] 강설대비 도로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	0.75억원 이내
		[1-6] 최첨단 지능형 도로관리시스템 기술개발	0.75억원 이내
핵심 2과제	SMART 도로-IT기반 교통운영기술 개발	[2-4] 무정차, 다차로 기반 SMART 영업시스템 구축	7.6425억원 이내
소 계			10.7925억원 이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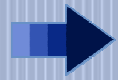
## ● 분리공모과제 **연구내용 및 연구비**는 과제제안요구서(RFP)를 참조하여 작성

- 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연구내용을 일부 가감할 수 있으나,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
- 연차별 지원예산은 RFP에 총 연구개발비가 제시된 경우 총 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편성
- ※ 총 지원예산 및 연차별 지원예산은 향후 “예산적정성 검토”, 선정평가 결과, 정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## ● 과제별 **연구기간**은 RFP 및 상세기획연구보고서 참조하여 작성

## ● 분리공모 시행에 따른 **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**

- **핵심과제와** 공히 상호간 구체적인 **연계·활용계획**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



## ① 연구개발 성과목표, 지표체계, 실용성 검증 및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필히 제시

- 분리공모과제 신청자는 연구개발 성과목표, 지표별 달성 목표치 및 가중치 등을 연구 개발계획서에 제시 (건설기술혁신사업 중점성과지표, 표준성과지표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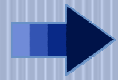
※ 과제선정 후 해당 연구책임자(기관)에 대한 진도점검, 관리 및 성과평가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

※ 성과목표 및 지표체계는 추후 사업단 KPI와 연계할 계획임

## ②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“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”의 기준을 따르되, 추가 부담 가능

## ③ 참여기업은 참여하고자 하는 과제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, 과제추진시 역할(자료, 기술 조사 또는 제공, 시험시공 현장제공 등)이 명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함

- 선정평가시 참여기업의 연구수행실적 및 역할, 연구결과물의 활용계획 등 자격기준 검토 하여 연구 참여 여부 결정에정임



## 공모 신청시 유의사항

- 국제공동연구 또는 전문가 활용방안
  - 해외 선도기관의 공동연구 등 추진방안 및 전문가 활용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
- 기 수행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공고 과제 관련 연구개발결과의 구체적인 연계·통합 및 활용방안을 연구계획에 포함
- 연구수행과정에서 실험이 필요한 경우, 건설기술혁신사업 「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구축」 과제의 “분산공유 6대 실험시설” 적극 활용
  - ※ 공고시 첨부한 “분산공유형 건설연구 인프라 실험시설 소개자료” 참조
- ※ 기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지침, 금번 공고 안내서 참조

### 3. 신청·접수 및 선정평가



# ▶ 과제선정절차

수행 단계	수행 내용
공고	■ 과제신청절차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과제 공모 및 설명회 개최
접수	■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대서류 제출(연구기관) 및 접수
사전검토	■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을 접수요건을 검토하여 접수, 보완, 반려 여부 결정 ※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등 수정·보완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, 보완요구사항 미 반영 시 반려조치
선정평가	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진행 (선정평가위원회)
연구계획 보완	■ 평가위원회, 건교평, 사업단의 수정·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 보완 (연구기관)
협약체결	■ 건교평, 사업단·핵심주관기관·세부연구기관·분리공모과제 연구기관 간 협약 체결 후 연구 착수

## ➔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

### ■ 신청자격

-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

### ■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

-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**사업단장 및 연구단장, 핵심주관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(주관, 협동, 공동,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)**.  
단,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
-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
-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과제 **상세기획서 전문가그룹의 위원장은 분리공모과제 연구책임자(협동, 공동, 위탁 포함)로 참여 불가**
-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 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, 선정 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,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

## ■ 연구인력사전등록
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(책임자급)들은 신청서 접수 2주 전까지 평가원연구관리시스템의 연구인력사전등록을 통하여 해당경력 및 관심분야를 등록 하여야 하며, 등록된 인원내 한하여 연구책임자(협동, 공동, 위탁)로 참여 가능

### ※ 연구인력 사전등록제란?

공고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신청 접수전 전문분야, 주요경력 및 관심분야 등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우수연구개발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·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



## ■ 사전등록 요령

-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(<http://ctpass.kictep.re.kr>)에 접속하여 [공고]메뉴 사전등록항목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인력 정보를 입력

### ■ 분리공모과제 유의사항

- 기 추진중인 핵심과제내 주관(협동, 공동, 위탁)연구책임자는 동일 핵심과제내 분리공모과제의 협동, 공동, 위탁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없음
- 세부과제 참여 연구기관(협동, 공동, 위탁)은 동일 핵심과제내 타 세부과제의 연구기관(협동, 공동, 위탁)으로 중복참여가 가능하나, 1개 기관이 세부과제의 연구기관(협동연구기관)으로는 2개까지 참여가능
  - ※ 단, 기 추진중인 동일 핵심과제내 주관(협동) 연구기관은 위 규정에 따라 1개까지 참여 가능
-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 단일 기관은 협동, 공동 또는 위탁 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
- 세부과제단위의 분리공모과제(1-6, 2-4)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에서만 위탁연구과제를 추진해야 하며, 세부과제내 연구기관(통칭 '세세부연구기관')단위의 분리공모과제(1-1-2, 1-2-2, 1-4-2과제)의 경우는 위탁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없음

### ■ 『협동연구기관』 및 『세부과제내 협동연구기관(통칭'세세부 연구기관')』 컨소시엄 구성시 유의사항

- “협동연구기관” 및 “세부과제 내 연구기관”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 기관이 해당 RFP상의 “연구개발 내용” 중 1개 이상의 “세부연구 내용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
- ※ 단, “세부연구내용”의 특성상 복수 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서 각 참여기관의 역할 및 예산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, 향후 선정평가와 협약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로 할 수 있음

### ■ 참여연구진 구성시 유의사항

- 연구성과 달성가능성 제고 및 연구수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연구진의 참여율은 30%이상을 확보하여야 함
- ※ 단순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은 미적용
- 운영규정 제4조 6호에 해당되는 기관(공사·공단 등)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소속 직원이어야 함



① 신청서 접수 일정

	공고기간	연구인력사전등록	인터넷입력	신청서접수
분리공모 과제	2009.4.22~5.21	2009.4.22~5.7 18:00까지	2009.5.19~20 18:00까지	2009.5.21 16:00까지

※ 신청서 접수 장소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빌딩 2층  
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

① 신청 서류

※ 금번 공고안내서 참조

## ● 선정평가 기준

- 과제 특성에 맞추어 평가기준 적용 (금번 공고안내서 참조)

## ● 가점 및 감점 기준

### ■ 연구수행형태에 따른 가점

- 대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
  - 중소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: 1점
  -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: 2점
-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: 2점

### ■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

-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
  - 신청기관 중 연구비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 : 1.0점
  - 그 외 기관은 최대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

### ◎ 가점 및 감점 기준 (계속)

#### ■ 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

- 『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』의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르되, 이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체결 된 과제의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종전 지침에 의함

#### ■ 추적평가결과에 따른 가점

- 종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점 및 감점 부여
  - 추적평가 결과 만점의 95%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 주관 연구책임자로 참여시 : 추적평가 후 2년간 가점 2점
  - 추적평가 결과 만점의 85% 이상 95%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 연구책임자가 신규 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 참여시 : 추적평가 후 2년간 가점 1점

## 4.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



# ▶ 정부출연금 지원비율

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곳	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	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기업 : 총 연구개발비의 <b>50퍼센트</b> 이내</li> <li>- 중소기업 : 총 연구개발비의 <b>75퍼센트</b> 이내</li> <li>-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</li> <li>- 그 밖의 경우 :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기업 : 부담금액의 <b>15퍼센트 이상</b></li> <li>- 중소기업 : 부담금액의 <b>10퍼센트 이상</b></li> <li>- 다만,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 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 을 현물로 부담 할 수 있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[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]</li> <li>- 직접경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[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]</li> </ul>

※ 세부과제단위의 분리공모과제(1-6, 2-4과제)는 세부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하고,  
세부과제내 연구기관(통칭 '세세부과제 연구기관')단위의 분리공모과제 (1-1-2, 1-2-2,  
1-4-2과제)는 과제별로 기업부담금 비율 준수

## ● 인건비(내부인건비)

-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
  -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(100%를 초과하지 못한다)에 따라 계상
  -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아니하나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여 지급 가능
    - 디자인, 설계, 콘텐츠,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
    - 연구개발서비스 분야
    -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 ● 인건비(외부인건비)

-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 되는 인건비
  -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**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**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』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**연구비 관리 우수기관**으로 인증된 대학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에 **직·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에 지급 할 수 있음**
  - ※ 인건비중 학생의 인건비는 참여율 100%를 기준으로 **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**
  - ※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(간접비, 연구수당 등)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**참여율 30% 이내에서 계상 가능**

## ● 직접비(연구 장비·재료비)

- 기기·장비 및 연구시설비
  -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와 부수기자재 , 연구시설의 설치·구입·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를 **실소요 경비로 계상**
  - **내부기자재, 시설의 임차 비용 및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 불가**
  -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된 장비의 재활용 여부 확인 후 계상(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장비 필수)
- 시약 및 재료비, 시험분석료, 전산처리, 관리비 등은 실소요 경비로 계상
-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경비
  - 실소요 경비로 계상하되 연구수행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, 재료비로 계상
  - 제작하고자 하는 내역 및 연구개발비 **산정자료를 제출**하여야 함
- 당해 과제 참여연구원의 국내·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당해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액으로 계상
  - 내부차량비, 차량임차비, 유류비 등 연구용도 외의 비용 제외
  - 개최기관에서 숙박·식사를 제공 할 경우 숙박·식사 비용 계상 불가

## ▶ 비목별 계상 기준

### ● 직접비(연구활동비)

- 국외 여비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(정부출연금 + 기업부담금 중 현금)의 3 ~ 7% 이내 계상
  - ※ 사업단의 경우 핵심과제별 적용하며, 추후 협약시 핵심주관기관과 선정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예정
  - 당해 연구기간내 동일국가에 동일 목적으로 중복출장 불가
  - 같은 목적으로 3인 이상 출장불가
- 인쇄·복사·인화·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·제세공과금 및 수수료,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, 위탁 정산비용
  - 최종 및 연차 과제별 보고서 인쇄, 배포 비용 반영
  - 전기료 상·하수도료,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, 경상 피복비, 휴대폰 사용료 등 계상 불가
-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구입·유지비용[대학연구실]
  - 냉난방기(선풍기, 온풍기, 에어컨 등), 공기정화기, 차광기(블라인드), 가습기, 스탠드, 정수기 등
- 위탁정산비용은 연구개발비의 현금부문(정부출연금 + 기업부담금 중 현금)의 규모별 계상
  - ※ 사업단의 경우 세부과제별 적용하며, 추후 협약시 주관(협동)기관과 선정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예정
- 인증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인증기관의 연구개발비의 현금을 제외

## ● 직접비(연구활동비-계속)

- 전문가활용, 국내/외 훈련, 기술정보수집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비, 세미나 개최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, 특허정보조사비,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
  - 학회 및 세미나의 **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 불가**
  -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 계상 불가
  -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전문가 현황정보 상세 기재
  - 기술도입비는 기술명, 도입국, 금액, 관련 세부연구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
  - 회식 및 유흥성 경비로 계상 불가
- 세부과제 조정·관리비
  - 세부(단위)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 경비를 실소요 경비로 계상
-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,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

## ➔ 비목별 계상 기준

### ● 직접비(연구수당)

-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·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
  - 인건비의 20%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초과집행 불가
  - 현금, 상품권, 선물비 집행 불가

### ● 위탁연구개발비

-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
  - 인건비(미지급 인건비 제외)와 직접비의 합계액의 40% 초과 불가

## ● 간접비

-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**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**
- **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17%범위에서 계상**  
단,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, 연구보안관리비, 성과활용지원비 만 계상
- 인력지원비
  - 지원인력 인건비 :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
  -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: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,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클 경우에만 해당
  - 연구개발능력성과급 : 주관연구기관장이 우수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
- 연구지원비
  - 기관 공통지원경비 :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
  - 연구실 안전관리비 :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(인건비의 2% 이내)
  - 연구보안관리비 :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 등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
  - 연구개발준비금 :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, 연가, 교육훈련 등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
  -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: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, 실험실 운영 지원비, 학술대회 지원비,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 경비(**직접비에 계상되는 않는 경우만 해당**)

## ● 간접비(계속)

### • 성과활용지원비

- 과학문화활동비 :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,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
-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 :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
(특허유지비는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)

※ 기타 비목별 계상기준 상세내용은 관련 규정 및 지침 참조

감사합니다.